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20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3,210,610원, 농어촌특별세 7,321,060원의 부과처분, 2012년분 재산세(건축물) 12,539,420원, 지역자원시설세 46,930원, 지방교육세 2,502,410원, 2013년분 재산세(건축물) 12,166,370원, 지역자원시설세 46,910원, 지방교육세 2,427,800원, 2014년분 재산세(건축물) 12,284,200원, 지역자원시설세 52,190원, 지방교육세 2,456,840원, 2012년분 재산세(토지) 4,733,710원, 지방교육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946,740원, 2013년분 재산세(토지) 4,843,790원, 지방교육세 968,760원, 2014년분 재산세(토지) 5,019,930원, 지방교육세 1,003,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1. 부산 부산진구 B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단대순진회로부터 매매대금 41억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5,576,179,07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047,160원, 농어촌특별세 11,152,350원, 지방교육세 22,304,710원 합계 256,504,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2014. 6.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인 C노래주점(영업장면적: 302.94㎡, 객실: 4개, 이하 '이 사건 제1영업장'이라 한다)과 단란주점 영업장인 D단란주점(영업장면적: 243.86㎡, 객실: 4개, 이하 '이 사건 제2영업장'이라 한다)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취득세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원고가 기납부한 일반과세 세액을 제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210,610원, 농어촌특별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7,321,060원 합계 80,531,670원(가산세 포함)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62,039,98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2012년분	12,539,420	46,930	2,502,410	4,733,710	946,740	
2013년분	12,166,370	46,910	2,427,800	4,843,790	968,760	
2014년분	12,284,200	52,190	2,456,840	5,019,930	1,003,980	**총합계**
합계	36,989,990	146,030	7,387,050	14,597,430	2,919,480	**62,039,980**

라. 원고는 2014.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영업장과 이 사건 제2영업장은 영업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별도로 구분된 영업장으로서 그 운영 및 관리 역시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 사건 제1, 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1)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를 유흥주점영업장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 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영업장에서 E이 2011. 10. 28.부터, F이 2013. 10. 30.경부터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영업장에서 G이 2011. 10. 28.부터, H가 2013. 11. 19.부터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영업장은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 세금 및 관리비, 음악저작물 사용료 등을 별도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2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546.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302.94㎡ + 243.86㎡), 객실 수가 8개(각 4개)인 영업장소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부산광역시 감사관과 피고 소속 공무원 3명이 종합감사를 위해 이 사건 제1, 2영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유흥접객원이나 종업원을 영업장별로 따로 배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제1영업장에는 사무실 겸 주방형태의 공간만 있을 뿐 독립적인 조리시설이 없고, 이 사건 제1, 2영업장에 제공되는 각종 음식의 조리 등은 주방종업원이 목격된 이 사건 제2영업장 내에 위치한 주방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화장실이 이 사건 제1영업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제2영업장의 이용자들도 위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외벽의 돌출 간판과 영업장 2층 입구의 간판에도 'I'라는 상호 하나로 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영업장의 대형 오픈 룸 전면에 있는 음악 반주시설 위 벽면에 'I'라는 상호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이 사건 제1, 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생각하고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1, 2영업장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임차인들과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및 음악저작물 사용료도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제1, 2영업장의 운영 현황과 위 각 영업장의 영업시기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별개의 임차인들과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1-27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끝.